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<개정 2020. 10. 30.>

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「대학원학칙」 제3장, 제22조 제2항, 「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」, 「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」 및 「학과 대학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」에 의거 대학원 법학과 “입학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학과위원회와 주임교수의 역할 및 입학전형 관련 세부사항”, “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”, “비법학전공자의 보충과목이수” 및 “법학과대학원위원회”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학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

제2조(학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) <개정 2020. 10. 30.>

- ① 대학원 법학과에는 학과위원회를 둔다.
- ② 학과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로 한다.
- ④ 학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.
- ⑤ 학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사정
 2. 학생의 징계, 제적, 학위수여 취소, 재입학에 관한 사항
 3.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4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 5. 대학원생의 고충에 관한 사항
 6. 기타 대학원 법학과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
- ⑥ 위원장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학과위원회의 소집과 참여)

- ① 학과위원회 위원장 혹은 학과위원 2인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.
 - ② 학과위원회 참여는 면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.
- [본조신설 2020. 10. 30.]

제4조(학과위원회 의결)

- ① 학과위원회의 의결안건은 참여 학과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.
 - ②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[본조신설 2020. 10. 30.]

제5조(대학원생 고충처리)

- ① 대학원 법학과 학생은 학업 및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이 있는 경우에 고충처리신청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② 고충처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주임교수는 고충상담신청자를 상담한 후, 교내 상담기구에 의뢰하거나 위원장에게 학과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고충처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대외부원장이 고충처리절차를 담당한다. <개정 2024. 11. 21.>

[본조신설 2017. 12. 19.]

[제27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3장 입학전형

제6조(입학전형 시기)

① 본 학과의 입학전형은 1년에 2번, 1~2학기 입학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0. 30.]

제7조(입학전형에서 주임교수의 역할)

① 주임교수는 입시관련 내규 제정, 혹은 개정 시 학과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주임교수는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대학원 입시 진행 공문 및 지침에 따른 입시서류 등 중요서류에 대한 보관을 책임진다.

③ 주임교수는 보직 교체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한다.

1. 보직 교체 시 주임교수는 입시 업무관련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후임 주임교수와 확인 후, 서명·보관한다.
2. 인수인계서에는 주임교수로 재직 시 시행된 입학전형에 대해서, 지원현황, 면접응시현황, 선발현황, 등록현황 등의 주요내용을 담는다.
3. 후임 주임교수는 인수인계서와 함께 보관 중인 입시 관련 서류 중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0. 30.]

제8조(입학전형에서의 학과위원회의 역할과 절차)

① 서류평가와 구술평가에 참여 가능한 학과위원이 참여한다. 다만, 학과위원이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전임교원이 참여한다.

② 서류평가 후에 구술평가대상자 및 최종합격(정원 범위 내 일부인원) 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를 개최하며, 구술평가 후에 최종 합격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를 개최한다. 최종 합격사정회의에서는 서류와 구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합격인원을 결정한다.

③ 합격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임교수의 서명을 받고 10년간 보관한다.

④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, 참석자 명단(불참자 명단 명시), 서류(구술)평가위원 명단, 입학사정결과(세부 명단은 별첨 파일로 대체가능), 특기사항(소속학과 교원의 가족/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회피·제척 사항 확인)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0. 30.]

제9조(서류 및 구술평가)

① 서류평가와 구술평가에는 각각 최소 3명이 참여해야 한다.

② 서류평가의 만점은 200점이며, 평가항목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.

1. 학업 및 연구계획서: 100점

- 2. 대학 및 대학원 성적: 100점
- ③ 구술평가의 만점은 100점이며, 평가항목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.
 - 1. 전공에 대한 지식: 35점
 - 2.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: 35점
 - 3. 전공에 대한 적성: 30점
- ④ 동점자의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.
 - 1. 구술점수
 - 2. 서류점수
 - 3. 구술평가에서 전공에 대한 적성 항목 점수
 - 4. 위의 고려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 시 학과위원회가 결정한다.
- ⑤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대학원 내규를 따른다.
[본조신설 2020. 10. 30.]

제10조(공인외국어시험)

공인외국어성적 인정 요건, 평가 및 제출면제요건은 일반대학원 모집요강에 명시하고, 이를 준수하여 입학 전형을 진행한다.

[본조신설 2020. 10. 30.]

제4장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

제1절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

제11조(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)

대학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박사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박사 전공종합시험(이하 '박사종합시험'이라 한다)의 합격,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석사논문계획서의 승인
- 2. 영어를 포함한 2종의 외국어시험 합격
- 3. 연구윤리과목의 이수 <개정 2017. 12. 19.>

[제2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12조(수험료)

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제11조 각 호의 시험별로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수험료는 주임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.

[제3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 <개정 2024. 11. 21.>

제2절 박사종합시험

제13조(응시자격)

박사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1.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을 것
- 2. 박사과정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고, 21학점 이상 이수할 것(단, 제18조 소정의 전공필수과목 이외 타

분야의 법학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)

3. 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 규정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할 것

4.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

[제4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14조(시험의 공고)

박사종합시험의 시험일시 및 장소·원서접수기간·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[제5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15조(응시원서의 제출)

전공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별지 서식 1의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1통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제6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16조(시험의 횟수)

박사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.

[제7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17조(시험방법)

전공종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연구능력을 시험한다.

[제8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18조(시험과목)

① 전공종합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전공필수 1과목과 전공선택 2과목으로 한다. 단, 한국연구재단 등재지(등재후보지 포함) 또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산하 센터에서 발간하는 특성화저널 및 Yonsei Law Journal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(단독 게재만을 말하며, 특성화저널 및 Yonsei Law Journal에 게재한 논문은 1편까지 인정)에는 1개 논문당 전공선택 1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25.> <개정 2024. 11. 21.>

② 전공필수과목은 별표1에서 정한 과목들 중 1과목으로 하고, 전공선택과목은 별표1에서 정한 과목들 중 전공필수 이외의 과목으로 한다.

③ 필기시험 과목의 범위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.

[제9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19조(시험위원)

① 주임교수는 응시자가 신청한 과목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필기시험위원을 지정하고, 필기시험위원은 주임교수의 의뢰를 받아 자신의 담당과목에 대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·채점한다. <개정 2024. 11. 21.>

② 주임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3인 이상을 구술시험위원으로 지정하고, 구술시험위원은 구술시험의 합격여부를 판정한다. <개정 2024. 11. 21.>

[제10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20조(합격의 인정)

- ① 필기시험은 응시과목 모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하며, 구술시험은 시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.
- ② 종합시험 중 필기시험에만 합격한 자가 차후 종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(2년)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[제11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3절 석사논문계획서

제21조(승인자격)

석사논문계획서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대학원 개설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할 것(단, 석사논문 작성 분야 이외 타 분야의 법학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) <개정 2024. 11. 21.>
2. 제23조 내지 제29조에서 규정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할 것
3. 보충과목 이수대상자는 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할 것

[제12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22조(승인신청 및 승인심사)

- ① 석사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 학기까지 별지 서식 2의 승인신청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승인신청서는 법학과에서 지정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석사논문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법학과에서 지정하는 일시에 석사논문계획서를 제출·발표하여 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③ 전항의 승인심사는 승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. 승인심사위원회는 주임교수 및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2인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 11. 21.>
- ④ 승인심사위원회는 승인신청자가 제출한 석사논문계획서의 검토, 발표청취 및 질의·응답을 통해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.

[제13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4절 외국어시험

제23조(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과목)

- ① 외국어 시험은 영어시험 및 제2외국어시험으로 한다.
- ② 영어시험은 연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TOEFL시험을 말한다.
- ③ 제2외국어시험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하며, 독일어·프랑스어·일본어·중국어의 4개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.

[제14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24조(응시자격)

외국어시험은 휴학중인 경우에도 응시할 수 있다.

[제15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25조(시험방법)

영어를 포함한 2종의 외국어 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하며, 제2외국어의 경우 문법 및 독해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출제한다.

[제16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26조(응시원서의 제출)

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주관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 법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[제17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27조(합격인정 점수)

- ① 영어시험은 53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. 대학원 입학전형시 제출한 영어시험 성적이 위 점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
- ② 제2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합격으로 인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, 공인된 어학능력인정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할 경우(대학원 입학전형시 제출한 공인된 어학능력인정시험 포함)에는 영어시험 또는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의 종류 및 합격인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. 별표2에 없는 어학능력시험의 경우 주임교수가 합격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1. 21.>
- ④ 대학원 과목 중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언어로 진행되는 원서강독을 2과목 이상 이수하고 각 과목의 성적이 A0 이상인 경우에는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 다만 2과목의 원서강독이 반드시 동일 언어일 필요는 없다.
- ⑤ 제3항과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학과가 지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[제18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28조(외국인학생의 특례)

- ① 본조에서 외국인학생이라 함은「연세대학교대학원학칙」제38조(외국인학생) 및「대학원외국인학생입학에 관한내규」에 의하여 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한 자를 말한다.
- ② 외국인학생의 경우 제23조의 외국어시험을 한국어시험으로 대체한다.
- ③ 한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인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.

[제19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29조(외국어시험 성적표 제출시기 및 유효기간)

- 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 제27조의 합격인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매학기 법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1. 21.>
- ② 공인된 어학능력시험 성적표는 매학기 법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1. 21.>
- ③ 제2항의 공인된 어학능력인정시험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주임교수가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1. 21.>

[제20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5장 보충과목의 이수

제30조(이수대상자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변호사 자격 소지자 제외)는 대학원 법학과에서 개설하는 법학전공 보충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9. 1.>

1.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
2. 박사과정 입학생 중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모두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

[제21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31조(보충과목의 종류 및 수강대상)

1. 대학원 법학과의 보충과목은 헌법의 기초, 민법의 기초, 형법의 기초이며, 비법학전공자를 수강대상으로 한다.
2. 법학전공자들은 보충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9. 1.>

[제22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32조(이수방식)

- ① <삭제>
- ② 보충과목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보충과목을 수강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이수가 인정되고, 이수방식으로 청강은 인정되지 않는다. <개정 2016. 11. 2.>

[제23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제33조(이수면제신청)

- ① 상,하위 또는 동급과정에서 제31조에서 정하는 법학보충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(6학점)를 이수하였을 경우, 별표 서식 3의 '보충과목 이수면제 요청서'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, 보충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2.> <개정 2024. 11. 21.>
- ② <삭제>
- ③ <삭제>
- ④ 일부과목 이수면제의 경우, 잔여과목 이수방식은 제31조에서 정하는 과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1. 2.>
- ⑤ 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충과목 이수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.

[제24조에서 이동 <2020. 10. 30.>]

부칙

1. 이 내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내규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내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6. 이 내규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.
- 7. 이 내규 개정 내용(별표 #1)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

별표 #1 박사과정 전공종합시험 과목(제18조 관련)

법철학, 국제법, 헌법, 행정법, 민사법, 상사법, 형법, 형사소송법, 민사소송법, 경제법, 사회법, 국제
통상법, 세법, IT법, 국제거래법, 지식재산권법, 환경법, 법사회학, 의료법, 법제사

별표 #2 어학능력인정시험의 종류 (제27조 관련)

구분	내용 및 합격인정점수
영어능력시험	TOEFL의 경우 PBT-530점 이상 / CBT-197점 이상 / IBT-71점 이상 ; TOEIC의 경우 700점 이상 ; TEPS의 경우 625점 이상 (New TEPS 265점 이상)
독일어능력시험	ZD A1 이상 (괴테 인스티튜트 실시)
일본어능력시험	구 JLPT 2급(신 JLPT N2)이상 혹은 JPT 600점 이상
중국어능력시험	구 HSK 5급 이상(신 HSK 4급-210이상)
프랑스어능력시험	DELF B1 이상 (알리앙스 프랑세즈 실시)

별표 #3 한국어시험의 종류 (제28조 관련)

구분	내용 및 합격인정점수
한국어능력시험	TOPIK 4급 이상
한국어교육과정수료	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 (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)